

등록번호	군정혁신담당관-19727
등록일자	2022. 11. 29.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인구청년정책담당	군정혁신담당관	부군수	군수
이기영	김민정	조석래	이기봉	이상근
협조자	예산담당 문순희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고성군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인구증가시책 신설 및 확대 계획 [결혼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요약 】

○ (추진배경)

- 근거조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신설: 결혼축하금(200만원)
 - 확대: 출산장려금(현재 기준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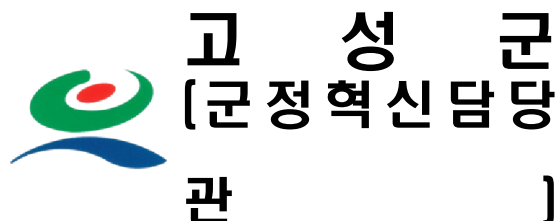
○ (소요예산) 770,000천 원

(단위: 천 원)

구분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22 당초예산 대비)
계		770,000	증 495,000
결혼축하금	2,000×110쌍	220,000	신규 시책 (증 220,000)
출산장려금	275,000×2배	550,000	기존 시책 확대 (증 275,000)

○ (향후계획)

- 2022. 1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
- 2023. 6.: 조례 개정 및 시행



인구증가시책 신설 및 확대 계획

[결혼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혼인율 및 출생률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혼인·출산가정에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 2021. 10월 우리군 포함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I 추진 배경

○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2021. 10월)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고성군 포함), 18개 관심지역 지정

○ (혼인율, 출생률 반토막) 최근 5년간 50% 이상 감소한 혼인율과 출생률

구분	연도별 혼인 및 출생건수						연평균 증감	16년 대비 증 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혼인건 수	214	183	162	146	112	97	△14.6%	△54.7%
출생건 수	273	229	207	158	137	120	△15.2%	△56.1%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같은 기간 경상남도는 16년 대비 혼인건수 △40.1%, 출생건수 △42.7%

○ 장기화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비혼과 딥크에 대한 인식 확산, 비용부담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혼인율과 출생률 감소

☞ 신혼부부와 임산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 지원과 출산장려금 확대 필요

II 사업 개요

1 결혼축하금 지원 [신규]

○ (사업근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사업대상) 신혼부부 110쌍

- 부부 중 한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 만 49세 부부

○ (사업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단, 재혼일 경우 1명이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지급방법) 2년간 현금 분할 지급(생애 1회)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 세부 지급방법은 붙임 참고

○ (소요예산) 220,000천원

- 산출근거: 2,000천원 × 110쌍

2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사업근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사업대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사업내용)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지원(출생순서에 따라 다름)

○ (지급방법) 1~5년간 현금 분할 지급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시기	6개월간 2회 분할 지급	1년간 3회 분할지 급	6개월간 2회 분할 지급	2년간 5회 분할지 급	1년간 3회 분할지 급	5년간 11회 분할 지급
	1회 50, 6개월후 50	6개월 간격으로 50~100	1회 100, 6개월후 100	6개월 간격으로 80	1회 300, 6개월후 100, 12개월후 100	6개월 간격으로 50~100

※ 세부 지급방법은 붙임 참고

○ (소요예산) 550,000천원

- 산출근거: $2,000 \times 50\text{명} = 100,000$ / $4,000 \times 50\text{명} = 200,000$ / $10,000 \times 25\text{명} = 250,000$

3 공통내용

○ (적용대상)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자 및 출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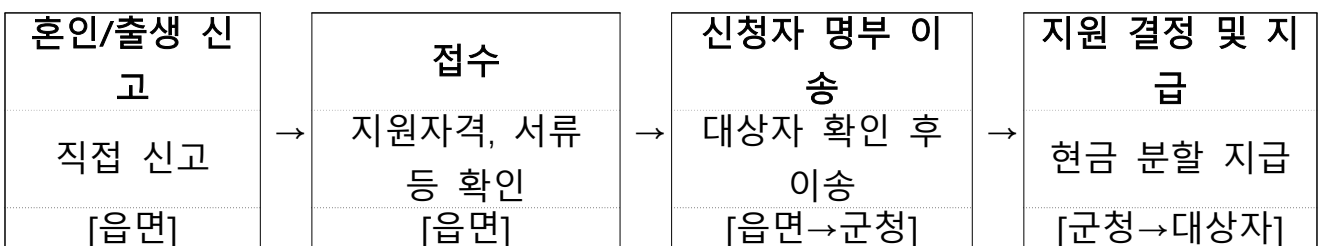
-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유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 중단

III 세부 내용

○ (지원대상)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부모

○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00만원 / 출산장려금 200~1,000만원

- 업무흐름도



※ 지급시기에 맞춰 지원자격 등 확인(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 중단)

IV 향후 계획

○ 2022. 1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

○ 2023. 4.: 조례 개정 및 추경 예산 확보

○ 2023. 6.: 조례 시행 및 사업 추진

V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 행정사항: '23년도 추경예산 편성 [기획감사담당관]
- 기대효과: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인구 유출 최소화, 인구 5만명 회복).

- 붙임 1. 개정(예정) 별표 1부.
2. 타 시군 현황 1부. 끝.